

# 검 토 보 고 서

의안번호 제122호

2020. 10.13.

건명	논산시 공무원 후생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(행정지원과)		
제안 및 제출자	논 산 시 장	제안연월일	2020. 10.13
소관위원회	행정자치위원회	회부연월일	2020. 10.13

## 보 고 내 용

### 제안이유

-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에서 제외된 수습공무원이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고 후생복지사업에 단체보험 지원 사업을 추가하여 직원들의 근무능률 향상에 도움을 주고자 함.

### 주요내용

- 후생복지제도에서 적용을 제한하고 있는 수습공무원을 적용 받을 수 있도록 규정 조정(안 제3조제3항)
- 후생복지사업에 단체보험료 지원 명문화(안 제4조)

### 검토의견

- 후생복지사업에 단체보험 지원 사업을 추가하여 직원들의 근무능률 향상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항으로
- 「지방자치법」 제22조지방공무원법 제77조 등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됨

# 검 토 보 고 서

의안번호 제123호

2020. 10.13.

건명	논산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(행정지원과)		
제안 및 제출자	논 산 시 장	제안연월일	2020. 10.13
소관위원회	행정자치위원회	회부연월일	2020. 10.13

## 보 고 내 용

### □ 제안이유

- 「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」에 따라 사회질서 의식 고취와 치안협력을 위해 조직되어 활동하고 있는 논산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,
- 「지방재정법」 제17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 지출근거 마련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

### □ 주요내용

- 조례의 목적 및 ‘논산시 재향경우회’에 대한 용어 정의를 규정 (안 제1조 ~ 제2조)
- 지원대상 사업 규정 (안 제3조)
  - 법질서 확립 및 홍보, 치안협력 및 지원, 시민 복리증진과 안전을 위한 봉사활동, 호국영령 추모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
-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 「논산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」 준용 (안 제4조)

## □ 검토의견

- 논산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,
-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」 제15조 「지방자치법」 제22조 「지방재정법」 제17조 등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 됨